

주안대학원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주안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 학칙 및 학위수여 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공.학위과정) ① 석사과정은 선교학(Intercultural Studies)전공을 두며, 학위과정은 신학석사(Th.M.)와 문학석사(M.A.)학위수여 과정을 둔다.

② 박사과정은 선교학(Intercultural Studies)을 전공하며 학위과정은 철학박사(Ph.D.) 또는 신학박사(Th.D.) 학위수여 과정을 둔다.

제2장 입학 및 재입학

제3조(입학자격) 본교 입학자격은 본 학칙 제7조에 준한다.

- ① 문학석사 학위 과정의 입학자격은 학사학위 또는 동등 이상의 학위소지자
- ② 신학석사 학위 과정의 입학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신학석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 ③ 철학박사 학위 과정 입학자격은 신학대학원(M.Div.과정) 졸업자(입학사정위원회가 정한 선교학 선수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 자, 또는 입학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교 입학 후 선수과목 3 ~ 12학점을 이수할 자) 또는 신학석사(Th.M.) 학위과정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석사(M.A.)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중 입학사정위원회의 허락을 득한 자

제4조(입학지원서류) 입학지원 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석사과정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졸업 및 성적증명서(대학교, 신학대학원, 대학원) 각 1부
 3. 목사 또는 교수(조교수 이상)추천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반명함판 사진/3매
 6. 소정의 수험료
- ② 박사과정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졸업 및 성적증명서(대학교, 신학대학원, 대학원)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반명함판 사진/3매
 5. 출신대학원 또는 본교 교수(조교수 이상) 추천서 1부
 6. 박사학위 연구계획서
 7. 소정의 수험료

제5조(외국인 학생 입학) ① 외국인은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

- ② 석사과정 외국인 학생은 국내 체류 시 2학기(1년) 이내에 학위과정의 모든 요건을 이수하고 귀국한다.
- ③ 외국인으로써 정규과정(석, 박사)에 입학할 지원자는 학칙 제 7조에 규정에 의하지 않고 서류 전형으로 교학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입학할 수 있다.
- ④ 외국인 학생은 본교에 체류하며 수학하는 학기만 등록금을 납입한다. 다만, 잔여학기의 등록금은 감면한다.
- ⑤ 기타 외국인 체류기간, 입학구비 서류 등은 외국인 학생에 대한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6조(선교사 입학) ① 학칙 제 7 조의 ①항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로서 교학위원회를 거쳐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다.

- ② 선교사 입학생의 수업연한은 시행세칙 제5조 ②항에 준한다.
- ③ 선교사 입학생의 등록금은 시행세칙 제5조 ④항에 준한다.
- ④ 선교사 연구생 및 특별학생의 등록금은 학점등록으로 하며, 연구생이 정규학생으로 입학할 경우에는 입학금과 차액을 납입한다.
- ⑤ 선교사 연구생이 정규학생으로 입학할 경우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7조(재입학생의 수업연한·재학연한)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제적전의 재학 연한과 재입학 후의 수업 연한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3장 교육과정·학점·수강신청·성적

제8조(학과목 개설) 학과장은 학과목 개설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개강 2개월 전까지 교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개설과목 수) 매 학기 3과목 이상 10과목 이내로 개설할 수 있다.

제10조(수강생수) 석사과정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은 수강생이 최소 7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개설한다. 다만, 수강생이 6인 이하일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박사과정은 수강생의 숫자와 상관없이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제11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등록금 납입을 필한 후 소정기한 내에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 ② 수강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어떤 사유로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금 납부와 함께 등록 카드를 교학행정실에 제출해야만 등록학생으로 간주한다.

제12조(수강신청 변경) ① 수강과목의 취소, 변경은 개강일로부터 4주 이내에만 가능하다.

- ② 수강과목의 변경, 취소 시에는 신청과 함께 수강을 취소할 과목의 담당교수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교학행정실에 제출한다.
- ③ 임의로 변경하여 수강한 과목은 성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④ 임의로 수강을 포기한 과목은 자동으로 F학점이 된다.

제13조(성적) ① 성적은 학과목 담당교수가 전산에 성적을 입력한 후 교학행정실에 성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석부와 함께 보고함으로써 최종확정한다.

- ② 확정된 성적은 과오처리 이외에는 정정할 수 없다. 과오처리의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그 사유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정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③ 재수강 학생의 최종 성적은 B+학점 이상 줄 수 없다.

제4장 등록 및 휴학

- 제14조(등록)** ① 학생의 등록은 입학등록, 학기등록, 논문등록, 학점등록, 연구생등록, 시험등록으로 구분한다.
- ②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전 ①항의 구분에 따라 납입금을 납입하고 등록을 해야 한다.
 - ③ 학위과정 이수기간 내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학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학점만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논문 재수강 등록을 해야 한다.
 - ⑤ 납입한 금액을 규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으며, 수험료 반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이후 1주일 이내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일 이후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4분의 3 해당액
학기개시일 이후 30일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후	없음

- 제15조(휴학)** ① 질병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4주 이상 계속하여 출석할 수 없는 학생은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③ 군복무를 위한 휴학은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학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 ④ 군입대휴학자는 복무확인서를 군입대 후 3개월 이내에 교학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 ⑤ 휴학원은 등록만료 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지 않는 미등록자는 자동으로 제적 처리된다.

제5장 학적부 기재 사항 변경

- 제16조(학적부 기재 사항 변경)**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 사항이 상의하여 다음 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사유가 기재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정정원을 교학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 ① 성명 정정
- ② 생년월일 정정

제6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17조(외국어시험) ① 석·박사 과정 공히 외국어로 하며(예 : TOEFL, TEPS 등) 학교가 요구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②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로 공부할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루고 학교가 요구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③ 외국어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외국어 및 전공종합시험 시행규정에 따른다.

제18조(전공종합시험) ① 종합시험과목은 석사과정 2과목, 박사과정 3과목으로 한다.

② 재시험 : 불합격자는 2회에 한하여 재응시 할 수 있다.

③ 전공종합시험 대한 응시자격은 외국어 및 전공종합시험 시행규정에 따른다.

제19조(수험료) 석·박사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시험은 소정의 수험료를 부과한다.

제7장 학위논문

제20조(논문지도교수의 선임) 본교 박사과정 4학기, 석사과정 3학기에 논문지도교수 선임 신청을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논문지도 교수는 논문분야에 따라 전공 관련 교수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생은 논문 관련 분야에 따라 전공 관련 교수와 상담하여 논문지도 교수를 신청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 교수를 경유하여 변경신청서를 교학행정실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2조(논문지도비, 논문심사비 책정) 논문지도비 및 심사비는 별도로 정한다.

제23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① 해당 학위과정 졸업 시험(종합시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② 학칙에서 규정하는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그 평균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③ 지도 교수로부터 논문지도를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받은 자

④ 해당 학위과정 재학 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자

제24조(논문연구계획서)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논문연구 계획서(소정 양식)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심사용 학위청구 논문은 소정 기일 내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서(지도교수 서명 포함)

② 가제본된 심사용 학위청구논문(10부)

제26조(심사위원장) 석사과정의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할 수 있다. 박사과정의 경우, 2차 교내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3차 교내외 논문심사위원장은 총장이 선임한 자로 한다.

제27조(심사방법) 청구논문심사는 석사와 박사로 구분한다.

- ① 석사학위논문 심사는 1차와 2차로 구분한다. 1차 심사는 형식심사로 논문의 형식 및 주제의 타당성, 연구방법, 연구성과 등을 심사한다. 2차 심사는 주심 및 부심 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② 박사학위논문 심사는 1차, 2차, 3차로 구분한다. 1차는 석사와 동일하며, 2차는 교내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3차 심사는 교내외 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③ 가제본된 1차 심사용 논문은 심사일 2주 전까지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학위청구논문 1차 심사 결과는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 ⑤ 학위청구논문 2차 및 3차 심사는 이전 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실시하며 다음과 같다.
 1. 가제본된 심사논문을 심사일 2주전까지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심사는 논문내용심사와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진다.
 3. 본 심사는 공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총장이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논문의 체계 및 제작) ① 학위논문의 작성은 대학원 논문작성 지침에 따른다.

- ② 석사논문은 60-100쪽을 넘지 않도록 하며, 박사논문은 120쪽 전후로 한다.
- ③ 모든 심사에 통과된 학위논문의 규격, 조판, 제본은 본교의 “학위논문작성지침”에 따르며 양식 1, 2, 3과 같이 한다.

제29조(논문의 제출)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통과된 학생은 본교에서 규정하는 “학위논문작성 지침”에 따라 제본된 논문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최종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 학기 말 정해진 기간까지로 한다.
- ③ 제출 논문은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논문 제출 시, 논문이 담긴 디스켓 또는 CD와 함께 논문이용 동의서(소정 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논문은 학위취득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표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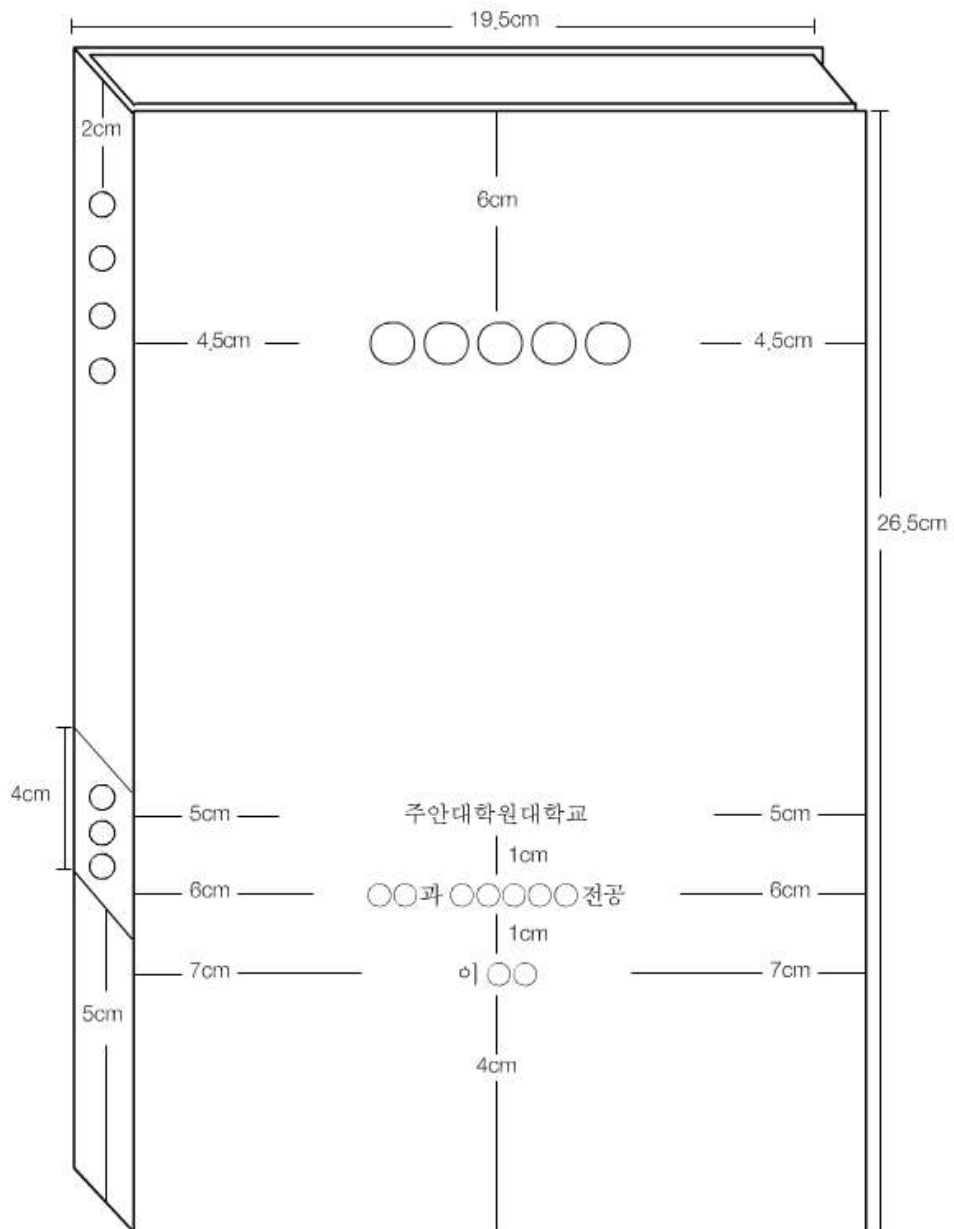
제31조(준용규정) 이 세칙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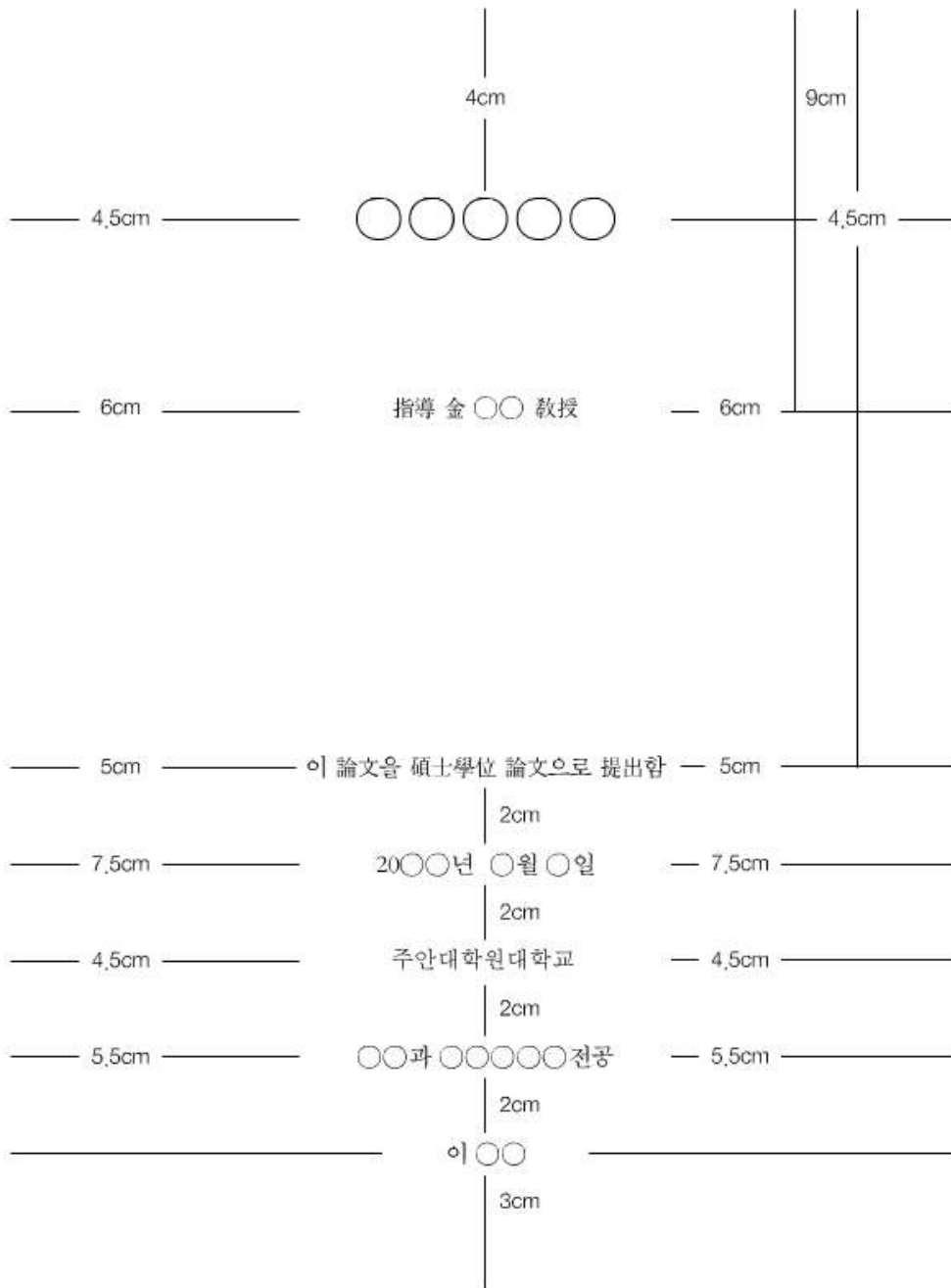
1. 본 학칙시행세칙은 학칙과 동시에 201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학칙과 동시에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학칙과 동시에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학칙과 동시에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학칙과 동시에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학칙과 동시에 201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양식 1】



【양식 2】



【양식 3】

